

상 鄭基善 <서울대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위원>
담 柳泰鉉 <公認會計士·대양회계법인>

耐用年數 단축 변경된 내용은?

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固定資産의 耐用年數가 단축 변경된 내용과 실무처리상 제기되는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 ① 의료법인 고정자산의 減價償却 耐用年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 ② 中古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 잔존耐用年數의 계산방법은 어떠한지요?
- ③ 法定 耐用年數가 개정되는 경우에 耐用年數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 ④ 개정된 耐用年數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경기도 H의료법인

답 ① 보통 적용하는 법정 耐用年數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種 類 | 固 定 資 産 | 耐用年數 (단위:년) | 定額法償却率 (定率法) |
|--------------|---------------------------|----------------|-----------------|
| 1) 건 물 | 철근, 철골콘크리트조 | 60 | 0.017 (0.038) |
| | 연와석조 및 부목조 | 50 | 0.020 (0.045) |
| | 철골조 | 50 | " (") |
| 2) 건물부속설비 |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 18 | 0.055 (0.120) |
| | 냉난방, 통풍, 보일러설비 | 10 | 0.100 (0.206) |
| | 승강기 설비 | 18 | 0.055 (0.120) |
| 3) 정 원 | 정 원 | 35 | 0.029 (0.064) |
| 4) 차 량 운 반 구 | 구급차 및 승용차 | 5 | 0.200 (0.369) |
| 5) 집 기 비 품 | 사무용탁자, 의자, 캐비닛 (금속제) | 10 (15) | 0.100 (0.206) |
| | 사무용탁자, 의자, 캐비닛 (기타의 것) | 5 (8) | 0.200 (0.369) |
| | 용접세트 | 8 | 0.125 (0.250) |
| | 전열장, 전열케스 | 5 (8) | 0.200 (0.369) |
| | 기타의 가구(금속제) | 10 (15) | 0.100 (0.206) |
| | " (기타의 것) | 5 (8) | 0.200 (0.369) |
| | 라디오, T.V. 등 음향기기 | 5 | 0.200 (0.3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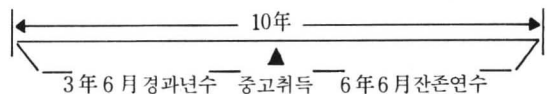
| | | | |
|--------------|----------------------------|---------|--------------------------------|
| | 냉·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세탁기 | 8 | 0.125 (0.250) |
| | 커피, 방석, 침구 기타 유사한 섬유제품 | 3 | 0.333 (0.536) |
| | 식사, 주방용품 | 5 | 0.200 (0.369) |
| | " (도자기 유리제의 것) | 2 | 0.500 (0.684) |
| 6) 사 무 기 기 |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 5 10 | 0.200 (0.369) 0.100 (0.206) |
| 7) 의 료 기 기 |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기기 (이동식) | 3 | 0.333 (0.536) |
| |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기기 (기타의 것) | 5 | 0.200 (0.369) |
| |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 4 | 0.250 (0.438) |
| | 조제기기 | 5 | 0.200 (0.369) |
| | 치과치료용 유니트 | 6 | 0.166 (0.319) |
| | 광학 검사기기 | 7 | 0.142 (0.280) |
| | 기타 도자기 또는 유리제 의료기기 | 3 | 0.333 (0.536) |
| | 기타 금속제 의료기기 상기 이외의 의료기기 | 9 4 | 0.111 (0.226) 0.250 (0.438) |
| 8) 크 리 님 설 비 | | 7 | 0.142 (0.280) |

위 표에서 耐用年數中 () 안의 내용연수는 변경전 종전 내용년수입니다.

② 中古取得資産, 數次再評價資産, 耐用年數 經過資産取得 때 잔존耐用年數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事例 1 (중고취득자산의 내용년수)

▲ 법정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3년 6월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는?



▲ (6년 6월) + (3년 6월 × 40%) = 6년 6월 + (42월 × 40%) = 6년 6월 + 16.8월 (1년 4.8월) =

7년 10.8월

따라서 잔존내용연수는 7년이 됨. 계산과정에서는 1년미만의 단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 事例 2 (數次再評價 때 내용연수)

▲ 법정내용연수가 10년인 건물을 다음과 같이 재평가하였을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 취득일 75. 1. 1
- 1차재평가일 79. 1. 1
- 2차재평가일 84. 1. 1

| 구 분 | 1 차 재평가 | 2 차 재평가 |
|----------|---|---|
| 경 과 년 수 | 4 년 | 5 년 |
| 잔 존 년 수 | 10 - 4 = 6 년 | 2 년 |
| 잔존 내용 연수 | $6 + 4 \times \frac{40}{100} = 6 + 1.6 = 7$ 년 | $2 + 5 \times \frac{40}{100} = 2 + 2 = 4$ 년 |

* 事例 3 (내용연수 경과자산 취득시)

▲ 법정내용연수가 10년이나 취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中古資産을 취득하였을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 잔존년수 0
- 경과년수 10년 (법정내용연수를 한도로함)
- 따라서 잔존내용연수는 4년임
 $0 + (10년 \times 40\%) = 4$ 년

③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別表에 규정된 耐用年數가 改正되어 종전보다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法改正에 의하여 耐用年數가 短縮된 경우에는 法律에 별도규정이 없으면 改正後부터 단축된 내용연수에 의하면됩니다. 예를들어 당초 법정 내용연수가 10년이었으나 8년으로 단축된 경우 改正 이후부터는 8년에 해당하는 償却率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中古取得資産이나 再評價資産의 경우는 改正된 法定耐用年數가增高 취득이나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에 의하며, 개정된 법정내용연수가 재평가 등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에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法定耐用年數의 短縮調整事例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例 示)

- 85년에 法이 개정되어 법정내용연수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경우 다음 고정자산에 대한 85사업년도의 상각비를 정률법에 의한 경우와 정액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81. 1. 1 취득(취득가액 1,000만원)
- 84. 12. 31까지의 감가상각액 440만원

▲ 정률법에 의한 경우

- 84사업년도까지는 내용연수 10년인 상각률 0.206 적용
- 85사업년도부터는 내용연수 5년인 상각률 0.369 적용 (1,000만원 - 440만원) × 0.369 = 206,640원

▲ 정액법에 의한 경우

- 84사업연도까지는 내용연수 10년인 상각률 0.10 적용 [상각한도액 = (1,000 - 100) × 0.1 = 90만원]
- 85사업연도부터는 내용연수 5년인 상각률 0.20 적용 상각한도액 = (1,000 - 100) × 0.2 = 180만원

④ 耐用年數 수정내용의 法人稅法 施行規則이 1985. 9. 27. 개정공포되면서 公布日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公布日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연수는 변경전 취득자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담당 柳泰鉉)

일요일 근무수당 課稅여부는?

문 病院職員이 일요일에 근무하고 手當을 받은 경우 課稅하여야 하는지요? (江原 K病院)

답 (1) 病院職員에 대한 所得稅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1983년 11월호 세무상담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이때 한가지는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일요일에 근무하고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와 女子職員의 경우 生理休暇日에 근무하고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非課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3年 이전까지는 이들 근무수당에 대하여도 과세되었으나 1983年 1월 1일부터는 非課稅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所得稅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福祉厚生的인 성질의 給與의 범위를 『勤勞基準法 또는 船員法에 의하여 근로자가 有給休暇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通常賃金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週休手當·生理休暇手當 또는 月次·年次手當 및 公務員이……(中略)……에 상당하는 金額』로 개정하여 週休手當과 生理休暇手當을 가산한 바 있습니다.

(2) 勤勞基準法 제46조에 의하면 『使用者는 연장근로근무(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夜間勤勞(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休日勤勞에 대하여는 通常賃金の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는 『使用者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月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医療陣이나 行政官理職員 등이 일요일 또는 公休日에 정상근무한 경우에는 1日分の 급여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나 이는 所得稅 計算에서는 제외됩니다. 生理休暇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女性中 이를 떳떳하게 청구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生理期間중에도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月1日分은 生理休暇日 勤勞手當으로 보아 非課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生理休暇請求書는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公衆保健医 수당지급 課稅는?

문 우리 병원에 배치된 公衆保健医에게 手當을 지급하였다면 課稅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慶南 Y病院〉

답 政府는 醫療脆弱地의 民間病院과 國·公立病院의 경우 醫師의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公衆保健医를 이들 지역이나 病院에 파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들은 軍医官 신분인데 단지 근무장소가 軍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들

의 계급에 상응하여 지급하여야 할 給與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로 어떤 名目이건 代價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公衆保健医에게는 手當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手當 등을 지급한 사실이 帳簿나 기타 資料에 의하여 밝혀진다면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手當을 지급한 경우 課稅問題는 다른 醫師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註) 法人稅基本通則 中 改正된 內容을 소개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8...3 (同一인에 대한 仮支給金과 仮受金計定이 兩立된 경우의 處理基準)

② 項 新設

事業年度 終了日에 一時相計하고 그 후 事業年度 開始日 이후에 다시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相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83年 8·9月号 본란에서 해설한 바와 같이 同一인에 대한 仮支給金과 仮受金이 會計年度末에도 그대로 兩立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同一인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認定利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基本通則은 만약 會計年度末에 相計處理하였다가 다음 年度初에 이를 다시 兩立하여 기장한 경우에는 會計年度末에 相計處理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鄭基善〉